

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(안)

의안 번호	53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3. 10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제정이유

-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, 규제의 신설·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등 심의·의결(안 제2조)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(안 제3조)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
- 참고사항 :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(98. 9. 25)
- 입법예고 : 불필요

4. 본문 : 복임과 같음

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'고성군규제 개혁위원회' 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규제의 신설·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3. 규제의 등록·공표에 관한 사항
4.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5.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②위원장은 부군수로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.

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실·과장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부서장 및 읍면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(관계전문가 포함)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 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.

제7조 (규제신고센터의 설치)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.

제8조 (수당등)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